선

람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人



www.namwon.go.kr

제34호

2018. 8. 3(금)

훈령

기관의 장

○남원시 훈령 제388호 남원시 가로등·보안등 관리 규정 ------ 1

고시

○남원시 고시 제2018- 91호 사도개설 허가내용 고시 ------ 11 ○남원시 고시 제2018- 92호 제3종 시설물의 지정고시 ------ 12

○남원시 고시 제2018- 93호 남원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 실시계획 인가 재고시(남원 예촌마당 조성사업) ------ 13

공고

○남원시 공고 제2018- 1272호 도로공고(운봉읍 신기리 산55-1) ------ 16

예규

○남원시 예규 제22호 남원시 내수면어업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 ------ 17

회 람

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2

남원시 가로등·보안등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남 원 시 장

직인

2018년 08월 03일

남원시 훈령 제 388 호

남원시 가로등·보안등 관리 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남원시 관내 가로등·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가로등"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주요간선 및 지선도로에 설치된 등과 집단으로 설치(기존시설 포함)되어 있는 등을 말한다.
 - 2. "보안등"이란 가로등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민편익에 제공되는 일체의 등 기구 시설을 보안등이라 한다.
- 제3조(설치 등) ① 가로등 및 보안등(이하 "가로등"이라 한다)은 남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설치한다.
 -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

협의하여야 하며,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련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

제4조(설치기준) ①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- 1.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
- 2. 소요자재는 KS 표시품, 규격품, 승인품을 사용
- 3.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최소거리 50미터 이내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
- 4.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간격으로 하고 경사지, 커브길, 골목 등 취약지역은 주변사항을 고려하여 설치
- 5. 점멸장치는 지상 1.5미터 이상 2.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 설치
-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, 세부기준을 따로 정한다.

제5조(설치 우선순위) 가로등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
- 2.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
- 3.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
- 4.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
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- 제6조(설치 제한) 가로등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.

- 1.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(집 마당, 축사, 사업장, 비닐하우스 앞등)
- 2.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 (단,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)
- 3.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
- 4.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
- 5.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(농작물 피해, 수면장애, 토지의 사용제한 등)
- 6. 보안등 설치 목적 이외의 장소 (등산로, 산책로, 공원, 임도, 농로, 학교, 관공서 등)
- 7. 그 밖에 시장이 가로등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곳
- 제7조(신청 절차) ① 가로등은 읍·면·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지가 사유지이거 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.
- 제8조(비용부담 등) ① 가로등 설치와 유지관리에 따라 비용과 전기 사용료는 시장이 부담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혜자(공공기관, 아파트, 연립주택, 상가, 업소등) 가 설치한 가로등은 수혜자가 부담한다.

- 제9조(관리자 지정) ① 시장은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원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유지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.
- 제10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시장은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제11조(지원) 시장은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.
- 제12조(유지관리) ① 시장은 가로등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수를 위해 단가계약을 통해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 유지관리 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금 선 보수하게 하고 수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 한다.
 - ③ 가로등 유지 보수 시 관급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유지보수 업체로 하여 금 사급자재로 사용토록 할 수 있다.
 - ④ 가로등은 일몰 후 점등하고, 일출 전 소등을 원칙으로 점·소등 시간을 조정 관리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·관리 하여야 한다.
- ⑥ 고장신고 등 유지관리에 용이 하도록 가로등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한다.
- 제13조(정기점검) 가로등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가로등의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제14조(관리시스템 운영) 가로등의 신설, 고장신고, 보수이력, 자재관리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.
- 제15조(이설)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 등의 변화로 기존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.
 - ③ 사업시행으로 가로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제16조(고장 등의 존폐) 시장은 가로등의 고장 등이 발견 시 존치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불필요한 등은 폐쇄하고, 필요한 등은 신속히 고장수선을 하여야 한다.
- 제17조(고장신고 처리) 시장은 가로등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고장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하여 신속히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가로등 설치(신설, 이설) 신청서(제7조제1항 관련)

설치 위치(주소)	
가로등 수혜가구 및 주민수	
설치(신설, 이설) 검토의견	
인근주민(농작물) 피해여부	
동의서 필요여부 등	
우선순위	
(2개 이상 신청할 경우)	

- ※ 붙임: 1. 위치도 1부
 - 2. 현장사진 1부
 - 3. 동의서 부(필요한 경우)

시

년 월 일

검토자 소속 직 성명 (인)

확인자 읍·면·동장 (직인)

남 원 시 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가로등 설치 동의서(제7조제1항 관련)

보

가로등 설치 (신설·이설) 위치	남원시
----------------------	-----

본인 소유 토지(인근)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, 가로등으로 인한 제반문제(수면장애, 농작물 피해,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위 동의자

주 소	전화번호
성 명	(인) 생 년 월 일
소유 토지 현황	남원시

남 원 시 장 귀하

[별지 제3호 서식]

제34호

가로등 관리대장(제12조제5항 관련)

보

	설 치 위 치 도로명	종 류	용 량 (w)	점등방식
수 리 현	황			
일 자 수	리내역			
		(전 <i>7</i>	g 사 진)	
		(2)	, , , ,	

[별지 제4호 서식]

제34호

가로등 표찰(제12조제6항 관련)

보

(예시)



남원시 가로(보안)등

예) 운봉

관리번호 예)178

고장신고 063-620-〇〇〇

[별지 제5호 서식]

가로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(제17조 관련)

과스이 기	,	신 고 자	가로등	위치	الراز ال	0] = 0] 7]
접수일자	성 명	전화번호	주소(지역)	번호	고장내용	완료일자

남원시청 고시 제2018 - 91호

사도개설 허가내용 고시

「사도법」 제4조에 의하여 사도개설 허가가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사업위치 : 남원시 갈치동 산59-6번지 외 3필지

시

- 2. 사업목적 : 태양광 신축부지 조성에 따른 진·출입로를 위한 사도 개설
- 3. 공사개요 : 연장 L=158.0m, 폭 B=4.0m (Con`c 포장)
- 4. 공사시행기간 : 2018. 08. ~ 2019. 07.
- 5. 공사실시방법 : 토목공사 일반시방서에 의거 실시
- 6. 허가기관 : 남원시청
- 7. 허가년월일 : 2018. 07. 30.
- 8. 피허가자의 주소·성명 : 박*란 (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)
- 9. 기타사항: 사도설치 허가사항 조건에 준함

2018년 08월 03일

남 원 시 장

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

남원시 고시 제2018-92호

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7월 31일

남원시청 도시과의 장

	대상 시설물		지저/쉐레\시 O	안전점검·안전조치에	НΠ
시설물 명칭	소재지	관리주체	- 지정(해제)사유	관한 사항	비고
장애인종합복지 관	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닭뫼안길 87	주민복지과	유지관리 실시 등 에 관한 지침(국 토부 고시 제 2018-45호) 별표	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, 상/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* 신규 지정·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. ※ 제3종 시설물 지정된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제출대상입니다. ※ 제3종 시설물 지정·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.	

남원시 고시 제2018-93호

남원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 실시계획 인가 재고시 (남원 예촌마당 조성사업)

남원 예촌마당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 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(변경)고시합니다.

남 원 시 장 2018년 8월 3일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사업(문화시설) 나. 사업의 명칭 : 남원 예촌마당 조성사업

시

2. 사업의 위치 및 규모

가. 위 치 : 남원시 월매길 12번지

나. 사업규모

구분	조성계획면적(m²)	비고
계	3,380	
물레방아갤러리	1,118	
사랑이야기관	300	리마인드웨딩 체험실, 여성친화공간
노닐마당	650	바닥분수, 그늘막쉼터
이벤트존	300	사랑이야기관과 연계한 스몰웨딩, 프로포즈 존
케릭터존	250	국악기캐릭터 설치, 트릭아트 포토존
약속정원 및 조경	762	언약의 퍼걸러, 사랑의 자물쇠 담장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남원시장(관광과)

나. 주 소 :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

4.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 ~ 2019. 12. 31

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

○토지조서

				면적	ᅾ(m²)		토지소유자		관계인		
연번	행정구역	지번	지목	공부면적	편입면적	성명또는 명칭	주소	성명또는명칭	주소	권리의종류 및 내용	비고
	합계			1,969	1,762						
1	남원시 쌍교동	255	도	13,684	68	국(건설부)	-				
2	남원시 쌍교동	260	대	1,053	1,053	남원시	-				
3	남원시	263	대	4	4	남원시	_				
4	<u> </u>	264	도	73	73	국(건설부)	-				
5	남원시 쌍교동	265	대	203	203	남원시	_				
6	남원시 쌍교동	266	대	413	413	소**	남원시 쌍교동 2**				
7	남원시 쌍교동	267	대	162	162	남원시	_				
8	남원시 쌍교동	268	대	3	3	윤**	남원읍 천거리 *	삼**** 주식회사	수원시 매탄동 416	근저당권	
9	남원시 쌍교동 남원시	269	대	50	50	김**	남원시 쌍교동 2**				
10	쌍교동	270	대	13	13	김**	"				
11	남원시 쌍교동	271	대	10	10	김**	"				
12	남원시 쌍교동	272	대	7	7	김**	"				
13	남원시 쌍교동	282	대	364	364	김**	남원시 월락동 부영** ***동***호				
14	남원시 쌍교동	284	대	46	46	남원시	_				
15	남원시 쌍교동	288	대	251	251	남원시	_				
16	남원시 쌍교동	289	대	180	180	남원시	_				
17	남원시 쌍교동	290	대	195	195	남원시	_				
18	남원시 쌍교동	291	대	106	106	남원시	-				
19	남원시 쌍교동	292	대	17	17	남원시	-				
20	남원시 쌍교동	293	대	111	111	남원시	-				
21	남원시 쌍교동	293- 1	도	8	8	남원시	_				
22	남원시 쌍교동	342	도	545	43	국(건설부)	-				

○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- 쌍교동 266

연번	행정구역	지번	지목		물 건	[소유자	비고		
- 전인	8374	시민	시크	물건명	구조 및 규격	편입수량	단위	성명또는 명칭	주소	ПТ		
						주택	목조/기와 (강판지붕)	51.98	m²			
				주택	시멘블럭조/세와	72.45	m²					
				까데기 (화장실및 보일러실)	목재/강판	37.28	m²					
				가추	목조/슬레트	5.44	m²					
				가추	목조/함석	8.00	m²					
				화장실	블럭/슬라브	3.68	m²]				
				까데기(창 고)	블럭/슬레트	8.19	m²					
				욕실	블럭/슬레트	3.72	m²	1	전북 남원시 쌍교동 2**			
				바닥	보도블럭	187.09	m²	1				
			266 대	대문1	철재	3.42	m²	<u>^</u> **				
				대문2	철재	1.35	m²					
1.	쌍교동	266		수도간		1	식					
		상독대 1 식		-"	- - 상독대 - 1 -							
				담장	브럭	15	m					
				화단1	블럭	9.79	m²					
				화단2 철쭉	블럭/돌	25.38	m²	-				
				설국 보리수		2	주 주	-				
				<u> </u>		3	<u> </u>	1				
				오렌지수		1	<u> </u>	-				
				동백		3	추	1				
				사철		2	주	1				
				라일락		1	주	1				
				목단		1	주]				
				감나무		1	주]				
				박태기		1	주]				
				석류		1	주]				
				동산이전비		1	식					

○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- 쌍교동 269

					물 건				소유자		
연번	연번 행정구역 지번	지목	물건명	구조 및 규격	편입수량	단위	성명또는 명칭	주소	비고		
				주택	목조/시멘기와	44.59	m²				
					창고	블럭/슬라브 (계단포함)	3.30	m²			
2	쌍교동	269	269 대	가추	목조/슬레트	6.00	m²	김**	전북 남원시 쌍교동 2**		
	7 3冊9 709	209 4	바닥	콘크리트	26.11	m²		선독 급천시 경포증 2**			
							대문	철재	3.00	m²	
				담장	브럭	15	m²				

○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- 쌍교동 282

~	비 웨저그여 지비 기			물 건																										
선민	연번 행정구역 지번	시민	! │지목 '	I인 시폭 	I인 시독 	시민 시독	시민 시작	I인 시독	킨 시폭	! 시폭	시독	물건명	구조 및 규격	편입수량	단위	성명또는 명칭	주소	비고												
							가추	목조/슬레트	10.44	m²																				
			홀	철파이프하우스	44.64	m²																								
4	쌍교동	202	000 511	화장실	목조슬레트	2.76	m²	김** 또는	전북 남원시 오들1길 ** 또는																					
4	ST.	282	282 내	282 내	282 내	282	282	282	282	202	202	282	282 내	202 41	282 내	282 대 -	282 대	282 내	282 대	담장	함석	22.30	m²	· 또는 강**	전북 남원시 쌍교동 2**					
				관정(가정용)		1.00	식																							
				보리수나무		1.00	주																							

◉ 남원시 공고 제 2018 - 1272호

시

도 로 공 고

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(신고)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7월 31일

남 원 시 장

○ 도로지정 공고내역

지정	대	지	건축주	허가(협의) 및	도로	도로	도로	C	인	
번호	위	え]	성명	신고번호	길이 (m)	너비 (m)	면적 (m²)	지 번	편입면적 (m²)	토지소유자
2018-1		운봉읍 산55-1	김*식	2015-건축과- 신축신고-279	325 20		2,811 38		2,811 38	오*현 오*임

남원시 내수면어업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남 원 시 장

직인

2018년 08월 03일

남원시 예규 제 22 호

남원시 내수면어업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

남원시 내수면어업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2조 중 "「내수면어업법」제9조제1항"을 "「내수면어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제1항"으로 한다.
- 제4조제2항 중 "별지 제1호 서식의"를 "「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"으로, "「내수면어업법」제10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 후 같은 순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"을 "법 제10조에 따른 우선순위 대상자를 적용하며, 비 우선순위자는 별표 3"으로 한다.
- 제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"만70세"를 "만 75세"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8. 생계수단이 농어업 외 타 업종으로 전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 제6조 중 "사항은 「내수면어업법」"을 "사항은 법"으로 한다.

제34호

별표 1, 별표 2,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2호 서식은 삭제한다.

부칙

보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내수면어업 허가・신고장소

권 역		위 치	연 장
계		4개소	68.3km
그기귀키	섬진강	대강면 월탄리 741(순창군 경계)부터 송동면 세전리 1336-77(하도보)까지	21.8
국가하천	요 천	천거동 238-1(승사교 금암보)부터 송동면 세전리 1336-77(하도보)까지	14.1
기버나	요 천	산동면 월석리 749(월석교)부터 이백면 척문리 832-248(요천교)까지	12.8
지방하천	람 천	운봉읍 행정리 535-1(엄계교)부터 산내면 백일리 518(해탈교)까지	19.6

[별표 2]

내수면어업 허가 · 신고정수

الم ا		~ _n	어 류			패 류		
선	역	총계	소 계	투 망	자 망	연 승 (주낙)	소 계	형 망
총계		32	18	4	10	4	14	14
국가	소계	28	16	3	10	3	12	12
하 천	점진강 요 천	28	16	3	10	3	12	12
નો <u>પો</u>	소계	4	2	1		1	2	2
지방	요 천	요천,람천(2)					9	2
하 천	람 천	2	2	1		1	2	2

※ 어업의 종류별로 1명당 1건만 허가·신고

※ 설정근거 : 남원시 내수면 생태 및 어족자원실태조사 용역(2017년)

[별표 3]

허가 · 신고 우선순위 평가 항목 및 기준

평가항목	배점	평가기준	
계	100점		
생 계 관 련	30점	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차 상위계층(생계곤란 자)비 수급권자 : 15점	· '
부 양 가 족	25점	○ 3인 : 19점	직계 존·비속으로 4인 : 22점 2인 : 16점 없음 : 10점
장 애 인 (조업가능자에 한함)	15점	○ 1~2급 : 15점 ○ 4급 : 11점	> 3급 : 13점 > 5급 : 9점 > 비장애인: 5점
남원시 거주기간	20점	○ 8년 : 16점 ○ 6년 : 12점	9년 : 18점 7년 : 14점 5년 : 10점 3년 : 6점
신청자 연령	10점	 ○ 30세 이하 : 10점 ○ 31~40세 이하 : 8점 ○ 41~50세 이하 : 6점 ○ 51~60세 이하 : 4점 ○ 61~74세 이하 : 2점 	

※ 가점사항

- 남원시 내수면 어업계 회원 : 5점(투망어업)

▷ 신청한 어업 종류와 현재 가지고 있는 어업 종류가 동일하여야 인정

※ 동점자 우선순위

- 1.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
- 2. 차 상위계층(생계곤란 자)
- 3. 부양가족 수 (만18세 미만, 60세 이상 직계 존·비속)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용) 이 지침은 <u>「내수면</u>	제2조(적용) <u>「내수면어</u>
어업법」제9조제1항 및 제11조	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
제1항에 따라 남원시(이하 "시"	9조제1항
라 한다)에서 내수면어업 허가	
• 신고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적	
용한다.	
제4조(내수면어업 허가・신고 처	제4조(내수면어업 허가・신고 처
리) ① (생 략)	리) ① (현행과 같음)
②내수면어업 허가・신고는 신	2
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	
어 있는 3년 이상 거주자에게	
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접	「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」(이
수받아 「내수면어업법」제10	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6조
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	제1항 및 제9조제1항의
후 같은 순위자는 별지 제2호	법 제10조에 따른 우선순위 대
<u>서식에 따른</u> 평가결과를 토대로	<u>상자를 적용하며, 비 우선순위</u>
처리하여야 한다.	<u>자는 별표 3의</u> .
제5조(내수면어업 허가・신고 제	제5조(내수면어업 허가・신고 제
한) ① (생 략)	한) ① (현행과 같음)
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	2
에게는 내수면어업 허가・신고	
를 제한 하여야 한다.	
1. 어업을 생업목적으로 종사하	<u><삭 제></u>
지 않는 사람	
2. · 3. 삭 제	

- 4. 5. (생략)
- 6. 미성년자 또는 <u>만70세</u> 이상 인 사람
- 7.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에 종 사하려는 사람 <신 설>

제6조(준용)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저 이외에 내수면어업 허가 · 신고 에 관한 사항은 「내수면어업 법」_과 「수산관계법령 위반행 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 다.

4.•5. (현행과 같음)
6 <u>만 75세</u>
<u><</u> 삭 제>
8. 생계수단이 농어업 외 타 업
종으로 전업하여 종사하고 있
<u>는 사람</u>
제6조(준용)
<u>사항은 법</u>

보